광명시 동장 복무 규정

제정 1981. 7. 1 훈령 제 26호
개정 2008. 6. 16 훈령 제273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광명시 동장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광명시 동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준용규정) 동장의 복무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7조부터 제58조까지와 「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2장, 제3장을 준용한다. 〈개정 2008. 6. 16〉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.

부칙 〈2008. 6. 16 훈령 제273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